

제주지방법원 2023. 1. 20 선고 2021나171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

담당변호사 최호웅

변 론 종 결 2022. 12. 2.

판 결 선 고 2023. 1. 20.

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26. 선고 2021가단62210 판결

## 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○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7. 21.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. 7. 21.

접수 제6647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○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원고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는 2021. 6. 25. 기준 주식회사 D(이하 ‘D’라 한다)에 대하여 ① 미수금 가스공급대금 801,587,955원, ② 소형저장탱크 매매 잔대금 177,563,524원, ③ 미변제 단기대여금 9,000,000원 합계 988,154,479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.

나.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총칭하여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1. 7. 21. 이 사건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를 청구취지 나.항 기재와 같이 마쳐주었다. 다. 그런데 D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,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. 또한 피고는 D의 대표 사내이사 F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는 D의 사해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.

라.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2. 판단

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[이 사건 제1심에서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, 당심에서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].

### 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

달리하여 부당하고,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,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문종철, 판사 최석준, 판사 강미혜